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08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1667 등록면허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영어영농조합법인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3. 31.
판 결 선 고	2016. 4. 28.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11. 원고에게 한 등록면허세 196,128,000원, 지방교육세 36,825,600원 합계 232,953,6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08

가. 원고는 2011. 3. 24. 협업적 어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B영어조합법인'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다. 원고의 대표자 C은 같은 날 원고가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의 면제신청을 하고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등록면허세를 면제하였다가, 2014. 11. 19.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등록면허세를 면제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redacted]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redacted]도지사는 2015. 2. 11. 원고의 과세천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11. 원고에게 설립 당시 출자총액 10,0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면허세 196,128,000원, 지방교육세 36,825,600원 합계 232,953,6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1]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2, 을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을 1, 4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가 구 농어업경영체법 상의 영어조합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칙대로 과세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한 등록면허세 징수 고지의 실질은 면제된 등록면허세를 새로운 부과처분의 형태로 추징하는 추징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27551 판결 등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08

(1) 원고는 영어조합법인 설립 이후 어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등록면허세 감면에 대하여 일정기간 어업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징하는 근거법규가 없다.

(2) 원고의 설립 당시 조합원들이 어업인은 아니었으나,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 · 유통 · 가공 · 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고' 양만장 계약을 한 사람들이었으므로, 원고는 영어조합법인에 해당한다.

(3) 설령 원고가 영어조합법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원고는 2012. 12. 27. 영농조합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농업을 하고 있었고, 영농조합법인도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에는 변동이 없다.

(4)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당연무효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에 대하여 2011. 4. 21. 15,897,800,000원이 증액 출자되었으나, 원고가 이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5. 3. 11. 위 출자액 증가분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307,464,570원, 지방교육세 53,818,770원을 부과하였다.

(2) 원고는 2012. 12. 27. 명칭을 B영어영농조합법인으로 변경하였다가, 2013. 10. 8. 영어영농조합법인A로 변경등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08

살피건대, 위 1.항의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설립등기를 마칠 당시 영어조합법인에 해당하지 않아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등록면허세의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면제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면제하였다가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원고가 위 면제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원고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였다. 이는 원고가 등록면허세 면제 당시에는 면제요건을 구비하였으나 그 이후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추징처분과는 그 과세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추징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 제2항은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는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등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서 '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2011. 7. 25. 법률 제10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호 나목은 어업인을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08

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은 어업인의 기준을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896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관련 법령의 체계적 해석상 구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인 조합의 설립등기 당시에 구 농업식품기본법상의 어업인의 지위에 있어야 함은 명백하고, 구 농업식품기본법상의 어업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앞으로 어업을 하려는 자도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문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의 설립등기 당시 조합원이었던 D, E, F, G, H, I, J이 구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이 아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설립등기 당시 영어조합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08

(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는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 제2항은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고, 달리 설립 이후의 사유로 설립등기의 등록면허세를 소급하여 면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면제될지 여부는 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의 성립 당시인 설립등기 시에 원고가 영어조합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설령 설립등기 이후에 원고가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소급하여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민성

판사 홍윤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08

판사 심우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08

관련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2. 등록면허세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이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출자, 사업,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08

⑥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제56조 및 제58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2011.7.25. 법률 제10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농어업인의 기준)

② 법 제3조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끝>